

[사 건 명] 행심 2014-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인천○○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 외 ○○○와 같은 반이었다.

나. 2014. 3. 7. 4교시 수업 시작 전 청구인이 요구르트를 엮지르자 청구인 옆에 있던 청구외 ○○○이 ○○○에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빌려 건네주었고, 청구인이 두루마리 채로 요구르트를 닦는 것으로 생각한 ○○○가 “휴지를 그 따구로 쓰지 말라고, 시발” 이라면서 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쓰고 난 휴지를 ○○○에게 주고, ○○○이 ○○○에게 휴지를 던져 주었는데, 던진 휴지가 ○○○의 머리를 스쳤고 ○○○는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였다.

라. 4교시 수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담당 교사 조○○의 7교시 반복 수업 안내로 ○○○가 불쾌한 반응을 하였고, 담당 교사는 주의를 주었지만 “선생님은 휴지를 던져 머리에 맞으면 기분이 나쁜데 어떨겠냐?” 고 말대꾸를 하자, 담당 교사는 이를 지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은 “싫다”, “내가 왜 나가야 하나?” 고 격렬히 거부하며 나가지 않았다. 이에 다른 아이들이 ○○○를 놀렸고 ○○○는 아이들에게 욕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도 ○○○에게 “나가봐라. 쌤이 부르잖아.” 라고 말하였고, ○○○가 청구인에게 “니 에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고 말을 하자 청구인이 ○○○에게 손가락 욕(凸, 일명 ‘빠큐’) 을 하였다. 그러자 ○○○가 필통에서 카터 칼을 꺼내들고 달려들어 청구인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주변의 학생들과 담당 교사가 두 사람을 말려 청구인과 ○○○가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3. 28. 인천○○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를, ○○○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따라 「출석정지 10일,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3. 28.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및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4. 9. 이 사건 처분을 송달 받았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먼저 욕을 했다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사실 여

부도 확인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가해자로 오판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것인데,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먼저 욕을 한 것은 ○○○이며, 같이 욕을 하게 된 것도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도 참을 수 없어 맞대응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평소 ○○○의 머리를 때리고, ○○○가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라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인데, 같은 반 학생의 진술서, 전문상담교사의 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인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학교 수업시간에 가해자 ○○○가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청구인의 목에 칼을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구타까지 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고,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새롭게 입학한지 며칠 되지 않은 학교에서 받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고등학교 생활 내내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학생들이 싸움에서 누가 먼저 욕을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싸움의 발단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싸움이 났으면 둘 다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빌려 쓰고 돌려준 휴지에 대한 청구인의 행동이 ○○○의 언어폭력보다 더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싸움의 발단은 ○○○가 한 청구인 부모님에 대한 욕설 때문인 것이고, 이것은 휴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오해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학생들의 진술서가 치킨을 사주고 유리하게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치부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어떠한 거짓도 없는 사실인 것이며, 이렇듯 학생들을 불신하면서 교육하는 피청구인을 납득할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보듬어주는 과

정을 배워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금번 사건은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폭력을 행사한 단순 사건이 아니며, 수업 중인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보는 앞에서 부모님의 욕을 하며, 목에 칼을 들이대고 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사건인 것인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청구인도 조금의 잘못이 있을 것이므로 둘 다 가해자로 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의 ○○○ 측의 주장만 믿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로 오판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은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같은 학급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서, ○○○의 진술서와 그 부모의 진술,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한 조치였으며,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이 아니고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의 욕이 먼저이고, 부모님을 욕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참을 수 없어 맞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휴지를 빌려 두루마리를 통째로 닦는 것에 ○○○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한 것은 욕을 한 것보다 더 좋지 못한 행동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어폭력과 놀리기, 빈정거리기, 면박주기, 비웃기 등의 따돌림 행위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 다. 또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는 간식거리를 사주면

서 청구인과 친하고 우호적인 학생들에 의해 유리하게 작성 된 것이고, 박○○, 이○○의 진술서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쓴 것이며, 백○○은 사건 초기에는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발생한 사건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의 진술은 학교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측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해자 측의 말만 믿고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사실의 유무와 이 사건 처분과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폭력이나 왕따를 당했다는 것은 ○○○○ 부모의 주장일 뿐이다.

마. 청구인은 ○○○○가 선생님 앞에서 청구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며 구타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 이 사건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업담당교사의 진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구타 사실은 없었다.

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청구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으며, 서면 사과처분으로 가해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 측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화해를 시도한 바 있고, 200만원의 합의금을 주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로를 하고 사과를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의 교육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2. 판 단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계법령 및 판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 목격자 이○○ 진술서 및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니 에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는 ○○○의 말에 화가 나서 ○○○에게 손가락 욕(凸, 일명 ‘빠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비록 청구인이 부모님과 관련한 ○○○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에게 손가락 욕(凸, 일명 ‘빠큐’)을 한 행동은 모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 다.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V.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